

의안번호	2215254
의 퇴 인	박정현의원
회 답 일	2026.2.25.
추 계 번호	25D7386

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,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, 행복지표·행복지수 개발 및 행복조사 실시, 행복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3억 8,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,462억 6,900만원(연평균 292억 5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177	—	—	—	—	177	35
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7조·제8조)	18	18	18	18	18	90	18
행복지표·행복지수 개발 및 행복조사(안 제12조,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)	4,029	34,238	34,935	35,632	36,346	145,180	29,036
행복의 날 행사 (안 제18조)	158	161	164	168	171	822	164
합 계	4,382	34,417	35,117	35,818	36,535	146,269	29,254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국민총행복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-국민총행복위원회는 국민총행복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총행복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)	-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민총행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함 -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
3	안 제7조(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)	-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	안 제8조(위원회의 구성 등)	-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	
4	안 제10조(사무처)	-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 -사무처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,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규정
5	안 제11조(재정 확보와 지원)	-국가는 행복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국가는 행복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재정 또는 행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2조 ~안 제13조(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조사 실시 등)	-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·보급하여야 함 -정부는 개발한 행복지표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-정부는 행복지표와 행복조사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출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4조(지역행복지표 및 지역행복조사)	-지방자치단체는 국민총행복지표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8	안 제15조(행복영향평가)	-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계획이나 사업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여야 함	의무규정
9	안 제17조(국민 참여)	-국가는 국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민참여형 공론화 제도 및 디지털 참여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야 하고 국민총행복의 가치와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10	안 제18조(행복의 날)	-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,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하며, 행복의 날 및 행복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국민총행복기본 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
2	안 제6조(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)	—	미대상: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각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3	안 제7조(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)	○	
	안 제8조(위원회의 구성 등)		
4	안 제10조(사무처)	×	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,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 조직 규모, 직급별 정원 등을 예상하기 어려움
5	안 제11조(재정 확보와 지원)	×	관련 규정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업 내용 등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움
6	안 제12조 ~안 제13조(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조사 실시 등)	○	
7	안 제14조(지역행복지표 및 지역행복조사)	○	
8	안 제15조(행복영향평가)	×	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계획이나 사업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될 사업 등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움
9	안 제17조(국민 참여)	×	관련 규정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디지털 참여 플랫폼,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의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움
10	안 제18조(행복의 날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5조에 따른 국민총행복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은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
 -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수립한다고 가정
- 안 제7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30명으로 가정하고, 이 중 민간위원은 18명으로 가정함
 -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,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¹⁾으로 가정
 -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
- 안 제12조,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조사 실시, 정부의 국민총행복지수 개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비용추계는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유사 사례를 준용함
 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표 개발, 행복지수 개발 및 행복조사 실시 비용은 추계 첫해인 2027년은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비용을 반영하고, 2028년 이후는 개발된 행복지표 등을 토대로 실제 행복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기준으로 비용을 추계함
 - 지역행복지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·도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가정
- 안 제18조에 따른 행복의 날 행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유사 사례의 평균예산을 준용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²⁾를 적용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1)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기획재정부,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).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5년 11월 기준, 단위: %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0	1.9	2.0	2.0	2.0	2.0	2.0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□ 안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7,700만원으로 추계됨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(최근 5건) 예산 평균금액³⁾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7년에 비용이 발생

[표 2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177	-	-	-	-	17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(안 제7조, 안 제8조)

□ 안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총행복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,800만원 등 5년간 총 9,000만원으로 추계됨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18명의 민간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
 - (연간 소요) 민간위원 18인 × 25만원 × 연 4회 = 1,800만원

[표 3]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7조·제8조)	18	18	18	18	18	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(자료: prism.go.kr)

-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90백만원),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327백만원),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98백만원),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37백만원),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(65백만원)
-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다. 행복지표·국민총행복지수 개발 및 행복조사(안 제12조,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)

-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정부 및 16개 시·도(서울특별시 제외)에서 행복지표·총행복지수 개발 및 행복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, 서울특별시에 실시한 유사 사례와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추계 첫해인 2027년에는 행복지표, 행복지수 개발, 행복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비용을 반영하고, 2028년 이후는 행복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소요비용으로 가정
 - 서울특별시의 시민행복지수 통계조사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2025년 기준 19억원⁴⁾임

[표 4] 서울특별시 실시 유사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연구용역	실시년도	소요예산
행복지표·행복지수 개발	시민참여형 서울행복지표 구축 및 정책연계를 위한 학술용역	2019	68
행복조사	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	2021	130

자료: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제정안에 따라 행복지표·행복지수 개발 및 행복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027년 40억 2,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,451억 8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5] 행복지표·행복지수 개발 및 행복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행복지표·행복지수 개발(a)	83	—	—	—	—	83
행복조사(b)	154	2,014	2,055	2,096	2,138	8,457
소계(c=a+b)	237	2,014	2,055	2,096	2,138	8,540
수행기관 수(d)	17	17	17	17	17	—
총 소요(c×d)	4,029	34,238	34,935	35,632	36,346	145,180

주: 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지표·행복지수 개발 및 행복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4) 자료: 서울특별시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전략과

라. 행복의 날 행사 실시(안 제18조)

- 행사 및 홍보사업 소요 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주요 행사 및 홍보사업 등 예산 평균금액(152백만원)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
[표 6] 행정안전부 실시 유사 사례 평균 비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예산	주요 내용
국민안전의 날	131	국민안전의 날 및 안전주간 운영,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개최
승강기 안전주간	144	승강기 안전주간 행사, 승강기 안전교육
기록의 날	86	기념행사 및 기록사랑 공모전
자전거의 날	245	기념식, 안전체험교실 운영, 경진대회

자료: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서 발췌

- 안 제18조에 따라 행복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5,800만원 등 총 8억 2,2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7] 행복의 날 행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행복의 날 행사 (안 제18조)	158	161	164	168	171	82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마. 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3억 8,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,462억 6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8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177	—	—	—	—	177
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7조·제8조)	18	18	18	18	18	90
행복지표·행복지수 개발 및 행복조사(안 제12조,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)	4,029	34,238	34,935	35,632	36,346	145,180
행복의 날 행사 (안 제18조)	158	161	164	168	171	822
합 계	4,382	34,417	35,117	35,818	36,535	146,26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